

한국NGO연합 사법감시 배심원단

(우) 08786 서울시 관악구 석곡로 87 반석빌딩 (T) 02) 523-8760~7 (E) goodlaw@goodlaw.org 주관 법률소비자연맹 - 담당 안철현 변호사, 이민석 변호사

**변호인/피고인을 기망하고 변론권 방어권차단, 법과 원칙 적극위배,
국정감사/국회 우롱, 국익/국위 훼손, 사법불신 가중시킨
오윤경 판사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위법재판 방기, 영전인사)을 규탄한다.**

1. 대법원(법원행정처)은 2015년과 2016년 국회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오윤경)의 저작권재판(피고인24명-학원포함)이 공소기각사유가 명백함에도 3~4년씩 지체하며 인권침해가 크다고 지적했으나 우이독경이었고, 위 법원은 한미형사공조협정으로 FBI와 미국 법무부를 통해 보내온 회신문까지 은닉해 놓고, 날조한 문서를 대법원 사이트에 등재/공시하였으며, 공소제기 2년7개월 만에 공소장변경(중요한 부분)까지 하면서, 재조경력 변호인들까지 검찰의 증거(유죄 입증)가 조작됐다고 이의를 하자 공판검사와 오윤경 판사가 강압/회유를 하며, 증거법에 의한 정식증거조사가 아닌 소위 상당한 방법, 즉 유신악법인 간이공판절차<유신시절 국회해산코 비상국무회의에서 졸속입법한 -사실상 증거조사없는 최악의 재판절차>로 공소기각될 피고인들까지 유죄선고를 하고 있다.

더더욱 2017년 1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2016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시정/처리요구사항 - <장기간 심리가 지연된 SAT 문제유출 사건(서울중앙법원)재판과 관련하여 가짜 원본을 근거로 선고가 내려지는 등 의혹이 있으므로 대법원은 재판사무감사 등 합당한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 - 을 무시하며, 문제의 당사자인 오윤경 판사를 부장판사직전의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승진(?)시킨 것은 국회와 국정감사까지 우롱한 것이며, 또한 주간한국/데일리한국 등 언론¹⁾에서 서울중앙지법의 SAT재판의 심각한 위법성 등을 3개월동안 특집보도하여 전국의 법조인들/SAT시험준비생 등의 분노와 사회적 물의가 있었음을 알고 있는 대법원의 급변 조치는 전국의 피고인의 인생과 일생을 초토화 시키는 국가형벌권 남용에 대한 각별한 책임이 있는 대법원이 본분을 저버린 것이다.

2. 우리 한국NGO연합 사법감시 배심원단은 350여개 시민, 사회단체와 법학교수와 변호사/변리사 등의 전문가단체의 연대기구로서, 저작권법 비친고죄 조항을 오/남용한 검찰의 SAT수사와 기소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2013.초 부터(내사 중 44회나 압수수색하였고, 동년 11. 15. 공소제기) 4개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정밀 모니터링을 하였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이 헌법과 법률과 진실의무/객관의무를 위반하고 형법의 보충성 원칙을 무시한 채 미국 민간단체 저작권<저작자는 고소는 커녕, 오히려 한국의 수사/재판으로 피해가 컸다>을 침해했다고-고소도 없는 저작자를 보호한다고- 자국민(自國民)을 형사처벌하려고 3~4년씩 협잡을 했다고 사법사(司法史)에 남을 사건이다.

(1) 「헌법」 제27조 제3항 전단(신속재판받을 권리)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접수후 6개월이내 판결선고)를 명백히 위반하며 3~4년째 피고인신분으로 묶어 놓고, 출국금지 취업제한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하였다.

(2) 신형사소송법의 핵심인 공판중심주의를 적극 또는 교묘히 위배하면서, 유신헌법하 졸속입법된 사실상 증거조사 없는 간이공판절차로 유죄선고를 남발하였다.

1) [주간한국] 억울함 풀지 못한 채 끝낸 SAT 문제유출 사건 피고인들 데일리한국 2016.12.24.

[주간한국] SAT 문제유출 사건, ‘웃지 못할’ 재판 방청기 데일리한국 2016.11.26.

[주간한국] SAT 문제유출 사건수사 사례로 본 ‘내사 중 압수수색 관행’ 문제... 데일리한국 2016.11.10.

[주간한국] ‘SAT 문제유출 사건’ 본질적 문제점은? 데일리한국 2016.10.29.

[주간한국] SAT 문제유출 사건 재판 ‘수상한 증거’ 논란 데일리한국 2016.10.15.

[주간한국] SAT 문제유출 사건 재판, ‘초유의 사태’ 되나 데일리한국 2016.10.08.

(3) 검찰의 잘못을 전제하고 시정해야 할 **법원이**, 검찰의 증거 은폐·은닉 나아가서 증거 조작을 묵인하고, 피고인들로 하여금 검찰이 제시하는 **가짜증거를 진짜증거(SAT원본)인 듯이** (대등한 소송당사자인) **검찰에 가서 증거조사를 하게** 하였다.

(4) 검찰에서의 열람(사실상의 증거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들로 하여금 **증거와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수년째 다툼이 있었던(공소사실을 다뤘은)사건을 사실상의 증거조사를 하지않는 ‘간이공판절차’**로 졸속·왜곡/유죄 선고하였다.

오윤경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로 하여금 **검사실에 가서 원본여부를 확인하라고** 하고, 그 확인사실을 공판정에서 증거로 인정하도록 강요(유도)하였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정식으로 증거조사하려면 재판이 2~3년씩 오래 걸리게 된다면서** 압박하여 변호할 의지를 상실케 했다.

(5) **한미형사공조협정**에 따른 국가간의 적법한 문건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에게 은폐하며, 교부하지도 않았다. **대법원 나외사건 사이트**에도 엉뚱한 사사로운 문건(FAX 1장)을 마치 국가간 정식 회신문서인 것처럼 등재해 놓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다가 적법한 문건은 재판이 다 끝난 후에야 슬쩍 등재해 놓았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가짜 문건(SAT원본)을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닉하고, 날조된 증거로 심리/판결한 것은, 판사의 진실의무와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사법범죄**이다.

3. SAT 재판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2015년²⁾과 2016년도³⁾에 **박지원** 국민의당 당대표 등 여야의 중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공소기각 사유라고 질타**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주간한국, 데일리한국 등)에 약 3개월 동안 상세하게 특집보도**되었음에도,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적법한 듯이 위법한 재판을 하여 권력분립(CnB)하에서 검찰의--(장O수 공판검사는 오윤경 판사의 재판기일에 미국에서 수신팍스의 SAT 시험지가 와 있다고 속였으며, 변호인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그럼 미국에서 증인을 불러와야겠네요 하였고, 판사는 한술 더떠서 증인신문을 하자면 2~3년은 더 걸릴 것이라면서 변호인의 항거를 불능케 하였음)--잘못을 바로잡기는 커녕 비호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기각 할 피고인들을 거짓 증거로 유죄 선고한 오윤경 판사를 승진시켰다.** 국민들이 알면 **폭동이 일어날 일**이 아닌가?

4. 이에, 우리 사법감시 배심원단은 크게 분노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피고인의 인권을 짓밟은 **오윤경 판사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법원행정처의 인사취소와 악역을 맡아 고생했다는 논공행상의 인사라는 오해가 없도록 공정한 사법행정을 촉구한다.**

2016. 2. 28.

한국NGO연합 사법감시 배심원단

공 동 단 장

강성규 시민사회 단체연합 대표	고승덕 변호사, 전 판사 국회의원	고영희 변리사 전 대한변리사회장	김갑재 환경과 복지 상임대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김성욱 여성유권자연맹 명예회장	김용원 로법,한법,대표 전직 검사
박원경 한국저작권연구소 소장	서성철 시민운동연합신문 발행인	송도진 한국대학생봉사단 단장	신평 로스쿨,교수, 전직 판사	엄호성 변호사 16/17국회의원	연기영 교수,전,동국대,법대학장	오호석 직능경제단체 총연합 회장
원인호 한국산업정책연구원 회장	이래철 전국NGO단체연대 대표	이자현 정신개혁시민협의회 회장	조병륜 전,헌법학회장,국민주권연	조태임 한국부인회 총본부회장	채수창 민주경우회장	최승재 전,경찰서장 소상공인 단체연합 회장
집행부 사무총장	강오식 전 대학 노조위원장	구기용 한국사법연구소 연구원	김연준 변호사 연구원,법무실장	안철현 변호사, 로법 대표	윤소라 국정감사 모니터단 국장	이민석 변호사, 전직 검사

2)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법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등 여야의원들이 ‘미국 SAT 저작권법 사건에서, 미국 저작권자들이 피고인들을 고소하지도 않았고, 미국에서는 저작권문제는 형사가 아닌 민사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한국 검찰이 피고인들을 기소하고 법원은 3년째 사건을 지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인 지위에서 조속히 해방되도록 신속한 재판’을 요구함. (법제사법위원회,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6. 4, 71면.)

3)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당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SAT 시험문제 유출 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지연으로 인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검사실에서의 증거 조사는 공판중심주의의 위반, 위법한 증거에 대한 판사의 공모 내지 묵인 등 의혹을 질타함.** (법제사법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7. 1., 87면)